

전주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가단122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빈, 송경한

피고1. B

2. C

3. D

4. E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강삼신, 김은경

변론 종결2019. 3. 6.

판결 선고2019. 3.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B은 <전북 완주군 F 답 3,884m²(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전북 완주군 G 답 1,091m²(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전주등기소 2007. 11. 14. 접수 제6678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2. 19. 접수 제12023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별지 <상속분 계산표>에 나오는 해당 공유지분의, ②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2. 19. 접수 제12022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별지 <상속분 계산표>에 나오는 해당 공유지분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토지·제2토지는 원래 원고 등의 아버지인 망 H(1991. 3.경 사망)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제1토지·제2토지에 관하여 ① 1994. 2. 19. -청구취지 중 해당란에 나오는 바와 같이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망 H의 장남으로서 원고의 형인 I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② 2007. 11. 14. 피고 B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I이 2012. 6.경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I이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제2토지를 실제로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증서 등에 기초하여 마치 1984. 3. 25.경 망 H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등기원인을 내세워 이 사건 제1토지·제2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위와 같이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 모두 말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 그 등기에 기초하여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또는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언급이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만 나오거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지지 않고, 비록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에 나오는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를음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거나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만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5489 판결 등 참조)인데, 이 사건에서 비록 I이 아버지인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제2토지를 실제로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정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제2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4-1, 4-1, 5~7, 8-1, 8-2, 9의 각 일부 기재와 피고 B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I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박관근

별지